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안(대안)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3년 7월 31일 신현태의원 등 5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과 동년 8월 11일 배기운의원 등 46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인력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제24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3. 8. 19)에서 공청회와 제3차 위원회(2003. 8. 20)에서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법안심사소위원회(2003. 8. 21)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그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4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2003. 8. 22)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2.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 사회에는 청년·고령자·여성 등 취업희망자가 넘쳐나고 있으

나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과 복리후생, 열악한 작업환경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령화·출산율 저하 등의 인구구조변화, 실업계 교육의 위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점차 심화, 고착화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과 실업사태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심의·조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정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수

급 원활화를 위해 지방대학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역 인재의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인력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공동훈련시설 설치 및 원격훈련 실시를 지원하고, 학생에게 중소기업 체험사업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중소기업의 필요인력 활용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을 지원하며, 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 운영에 있어 중소기업청장과 병무청장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교수·연구원의 중소기업 임직원 겸임·겸직의 특례를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대학내 “협력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이를 기업부설연구소로 봄(안 제12조 내지 제16조).

마.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

체가 되어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한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그 추진경비를 지원함(안 제19조).

바. 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이 고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및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고용보험 법상의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원함(안 제21조).

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생산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및 기술인력의 국제교류를 지원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정부는 중소기업에 인력유입 촉진을 위한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지원함(안 제24조 내지 제26조).

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해 경영상담, 지도활동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비투자 지원 등을 제공함(안 제27조).

차.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장기근속자에게 창업지원, 국내외 연수, 주택의 우선분양 등을 지원 또는 우대함(안 제28조 내지 제30조).

카. 정부는 인력지원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학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에 있어 소기업을 우대함(안 제33조 내지 제35조).

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협동조합등”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및 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인력구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중소기업의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

<p>기업의 인력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③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의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제8조(산학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필요 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산학협력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심의·조정) ①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과 관련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사항 4. 중소기업인력지원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의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 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활용 등 중소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소기업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업종별·직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양성사업 2. 미취업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 현장연수사업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한 사업 <p>②정부는 지역특성화산업 또는 지역선도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중 어느 하나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대학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설 및 취업연계사업 2. 지방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사업

3. 지역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협동조합등과 인력양성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하는 사업
4.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마케팅, 디자인, 물류분야 등의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사업
 ③정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을 위한 시설·인력 및 교육프로그램의 공동활용사업
 2. 기술인력의 파견근무·기술지도활동 등을 통한 인력의 공동 활용사업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력관련 협력사업
 ④정부는 중소기업이 퇴직 및 전직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소기업 공동훈련시설)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능력 제고를 위하여 첨단 정

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훈련 시행에 필요한 정보처리 시스템의 도입, 원격교육과정의 개발, 교육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소기업체험사업) ①정부는 각급 학교 학생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기업활동을 체험하게 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험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학교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비용보조·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체험사업 참가실적을 학점 또는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실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지원) ①노동부장관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13조(외국전문인력의 안정적 활용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이 필요

한 외국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제도에 관한 협의) 중소기업청장은 병역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제도의 개선에 관하여 병무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중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및 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겸임 또는 겸직은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교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이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내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본다.

제17조(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 직업보도교육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사업장내에서 유급의 현장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중소기업의 구인활동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인활동 및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제19조(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협동조합등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인력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조사
2.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채용활동
3.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사업
4.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훈련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인력고도화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력고도화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인력고도화계획의 관리 및 취소) ① 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협동조합등이 인력고도화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 ① 노동

부장관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고용 기회의 확대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으로 보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에 투자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경쟁력제고 등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요건·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22조(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생산공정의 진단 및 설계, 공정개선 및 신공정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술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기술인력과의 교류·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제24조(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 공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직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설치·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다수의 중소기업이 직장과 주거가 원거리인 재직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숙박시설
3.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보육시설

제25조(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중소기업 생산현장 근무를 기피하게 하는 열·분진·악취 및 소음 등의 요인(이하 이 조에서 “직무기피요인”이라 한다)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직무기피요인에 대한 조사
2. 직무기피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
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개발된 설비 또는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6조(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수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포상, 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2. 근로환경·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등을 모범적으로 개선한 중소기업
3. 산·학·연 협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소기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협동조합등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상담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활동
3.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설비투자지원

제28조(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동일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으로서 선정당시 와 동일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동일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제29조(우수근로자의 연수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등 또는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동일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로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한 근로자를 선발하여 국내 및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주택의 우선분양) 정부는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 받게 되는 주택은 5년의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동안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제31조(금융 및 세제지원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소기업의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한다.

제34조(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대)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기업을 우대한다.

제35조(소기업의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소기업근로자를 우대

한다.

제6장 보 칙

제36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 또는 노동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등 중소기업관련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유럽생산성본부는 생산성에 대해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진다는 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